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96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조지연 · 박준태 · 장동혁
엄태영 · 최수진 · 강승규
김승수 · 우재준 · 김용태
김정재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화학물질 사용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교체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